

알기 쉬운 공정거래 제도(1)

박 상 용 /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서기관

공정거래 제도의 導入과 그 意義

공정거래 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초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도 이제 잘 살아 보자’는 기치 아래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토개발에 매진하였다. 당시의 보잘것없는 경제 규모와 좁은 영토에 제대로 나오는 게 없는 부존자원 및 투자자본의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후대에 가난을 물리지 말자는 국민적 의지는 고난을 극복하고 61~80년 사이 연평균 8.5%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국민총생산은 약 4배가 성장되고 오직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모토 하에 수출산업위주로 경제정책을 편 결과 수출 규모가 61년 당시 41백만 달러에서 80년에 175억 달러로 무려 427배의 놀라운 증가를 가져왔다. 이 당시 개발 연대에 얽힌 기업 창업에 대한 각종 신화같은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이룩해 놓은 경제 성장은 놀라운 양적 팽창을 이루는데는 성공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사회 각 부문간 분배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는 한편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시장 기능의 왜곡 및 독과점구조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분배 구조의 왜곡은 소유집중의 심화를 가져오고 부의 편중으로 인한 국민적 위화감이 확대되었다. 그러던중 63년의 시멘트, 밀가루 및 설탕을 생산하던 몇몇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담

합 인상한 소위 ‘삼분사건(三粉事件)’은 국민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경제 개발붐에 편승하여 물가가 앙등하던 차에 이러한 독과점사업자의 비도덕적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고, 정부는 즉시 해당업체에게 행위를 중지토록 하는 한편,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당시 우세하던 경제 건설 우선 논리에 밀려 좌절되었다.

이후 몇차례 공정거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던중 75년 후반에 들어 독과점 기업들간에 시장 점유율 확대를 둘러싸고 벌어진 상품에 대한 과다 포장, 허위·과장 광고 및 선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물가를 자극함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2월, 그 동안의 공정거래법 제정 방침을 참고하여 물가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독과점가격의 신고 및 지정, 경쟁제한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정거래법의 제정

순탄하던 우리나라 경제는 70년대 말에 들면서 세계적 경기 불황과 함께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들이 하나 둘 노출되기 시작했다. 70년대 후반에 절정을 이루던 중등건설 경기와 과다한 재정 지출로 인한 통화 팽창, 그리고 제2차 석유 파동은 국내 물가의 급속한 상승을 야기시켰고, 개발 연대 초기에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졌던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정책과 물가관리 정책 등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시장의 가격자동 조절 기능을 저해

하고 경제적·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특히, 정부의 갖가지 경쟁 제한적인 인·허가 정책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억제하여 시장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책임경영 의식을 약화시켰다.

정부는 물가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책보다는 최고 가격의 지정, 독과점품목 가격의 사전 신고 등과 같은 직접적인 물가 관리 방식을 유지함에 따라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매점매석의 성행과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켰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비호택택에 성장한 독과점 사업자들은 자기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독과점으로 벌여들인 초과 이윤으로 마구잡이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해 나갔다. 이들의 전국적인 땅투기 등 비생산적 투자는 국가의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전반적인 윤리성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기존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한 반성과 경제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대두되고 그동안의 경험과 물가안정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79년 9월, 「공정거래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다.

정부는 80년 1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학계, 언론계, 업계, 경제단체, 법조계, 소비자단체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갖고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마련하여 80년 12월 31일자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뒤에 마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법”)과 함께 공정거래제도의 중요한 3대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 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제도는 경쟁적인 시장 구조의 조성 및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 및 목적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 제도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특정 산업이나 업종을 이롭게 한다든지 혹은 해롭게 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아니다. 단지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편적인 ‘게임의 룰’을 정하여 놓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것이다.

즉, 공정거래 제도는 시장 경제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인 바, 정부는 민간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직접적인 규제와 간섭을 줄여 나가는 반면 공정거래 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경제질서 분야에의 규제와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공정거래 제도의 주요 내용

독과점시장의 감시

1. 독과점 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제도

지난 94년 11월 KDI는 「국제화 시대의 한국 경제 운용」이라는 보고서(좌승희 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정치·행정·법조·교육·문화·언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익 집단 및 기득권층의 ‘독과점 구조’로 이루어진 ‘독과점 왕국’으로 현 상태로는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공정한 진입제한 철폐와 시장개방 촉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수요·공급의 조정과 가격이 시장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독점 공급자 또는 독점 수요자의 힘으로 정해진다. 즉, 독점 공급자(또는 독점 수요자)는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자유 경쟁 상태보다 더 적은 수량의 제품으로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수요독점은 그 반대)하려고 하는 바,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이러한 자원 이용에 있어서의 왜곡은 결국 제품의 원가와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독과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과점 사업자는 축적된 자본에 의하여 기술 혁신,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독과점 사업자는 이와 같은 경쟁의 압력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거래 조건 등의 조절을 통한 독점적 이윤 추구로 일반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비해 시장에 더 큰 악영향을 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고시하여 이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은 최근 1년간의 국내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1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 이하의 사업자가 7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도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매년 말 지정하여 다음해 1년간 운용하는데, 95년 시장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로 138개 품목, 316개 사업자를 지정·고시하였다. 이들은 95년중 부당한 가격 조작, 출고 조절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새로운 사업자 진입의 제한,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등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하여 감시받게 된다.

이중 가격 조작 및 출고제한 행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독과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수시 직권 조사를 통해 중점 감시하고 있다.

2. 기업 결합 심사

기업 결합이란 독립된 기업들이 인적·물적·자본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기업이 되거나 개별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없어지고 사업 활동의 의사

<표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현황

구분		연도	81	87	90	94	95
품 종 순	사	목	42	106	135	140	138
	사	업	102	240	314	332	316
	업	자	71	161	180	194	191

※ 주 1: 93년 법개정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기준 변경(매출액 300억 원 이상→500억 원 이상)

※ 주 2: 총사업자수는 각품목별 해당 사업자수를 모두 총계한 수

※ 주 3: 순사업자수는 총사업자수에서 중복되는 사업자를 뺀 순사업자 수

(예) A 사업자가 3개 품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품목수는 3, 총사업자수는 3, 순사업자수는 1로 집계

<표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만 행위 유형별 시정 실적

(경고 이상, 건)

구분		연도	87	88	89	90	91	92	93	94
타 부 배 구 우 재 기	사	업	3	-	-	1	-	2	2	1
	업	자	1	2	1	1	3	-	2	1
	의	사	13	1	13	1	-	5	-	-
	사	업	3	1	11	4	5	5	4	-
	업	자	8	3	24	14	9	24	29	14
	의	사	4	1	6	3	2	9	3	1
	사	업	1	-	-	1	-	6	-	2
	업	자								
	의	사								
	사	업	계	33	8	55	25	19	52	40

결정이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 결합은 기업의 성장이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 기업 결합의 유형별 분류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기업 결합의 종류는 결합되는 기업의 제품 판매 시장간의 관계에 따라 <표 3>과 같이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 결합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 결합은 기업 규모의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쟁기업의 수를 감소시켜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 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 양수, 회사 신설 등 5

<표 3>

기업 결합의 종류

종 류	내 용
수 평 결 합 (Horizontal Merger)	동종 또는 인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간 결합 (예) 버스 생산사와 승용차 생산사
수 직 결 합 (Vertical Merger)	원재료의 생산에서 제품의 생산,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 과정의 수직적 흐름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 즉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결합 (예) 자동차 부품사와 조립 공장 및 유통 업체
혼 합 결 합 (Conglomerate Merger)	결합하는 기업간에 수평 또는 수직적 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시장에 있어서의 결합 (예) 항공사와 여행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관리 제도를 통해 독과점적 시장 구조의 폐해를 규제하는 한편, 시장의 독과점화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시 사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가지 유형의 기업 결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의 억제

1.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현황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의 특징을 보면 첫째, 소유 집중면에서 오너(owner)를 중심으로 한 소수 특정인 및 친인척에게 집중되어 있다. 30대 기업 집단의 대주주 지분율이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계열 회사 및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94년 4월 현재 42.7%나 되는 등 높은 소유 집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4>

기업 결합 추이

(건, %)

구분 \ 연도	89	91	93	94
회사 신설	83 (43)	55 (35.7)	24 (19.5)	55 (28.2)
합 병	25 (12.9)	50 (32.5)	55 (44.7)	48 (24.6)
주식 취득	62 (32.1)	37 (24.0)	29 (23.6)	77 (39.5)
영업 양수	10 (5.2)	7 (4.6)	13 (10.6)	13 (6.7)
임원 겸임	13 (6.8)	5 (3.2)	2 (1.6)	2 (1.0)
계	193 (100)	154 (100)	123 (100)	195 (100)

주: () 안은 구성비

<표 5>

30대 기업 집단 내부 지분율

(%)

구분 \ 연·월	87. 4.	92. 4.	93. 4.	94. 4.
동일인및특수관계인	15.1	14.7	10.3	9.7
계 열 회 사	41.1	31.5	33.1	33.1
계	56.2	46.2	43.4	42.7

또한, 이러한 개인(가족) 중심의 소유 형태는 30대 기업 집단의 기업 공개가 94년 4월 현재 26.6%

에 불과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 집중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특유의 그룹 중심의 선단식 운영으로 매년 계열 기업을 통한 소위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관련이 없는 업종에까지 계열회사수를 늘려가고 있다.

셋째, 시장 집중면에서 보면, 상위 3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시장(소위 '독과점형 시장'이라 부름)이 품목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4.6%에 달하고 있다. 이들중 대부분이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영위하는 품목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성과는 상관없이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을 해온 것이다. <표 7>에서도 보듯이 해마다 30대 대규모기업 집단은 다른 업종으로 계열 기업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제도는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무리한 계열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2.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표 6>

30대 기업집단의 기업 공개 비율

(94년 4월 현재, 개, 10억 원)

	계열 회사전체		공 개 기 업		기업 공개 비율(%)	
	회사수	자본금	회사수	자본금	회사수	자본금
30대	616	22,232	164	12,629	26.6	56.8

일부에서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들어 재벌기업에 의한 독과점 현상을 옹호하는 논리도 있으나, 여기서 대규모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의 논리는 개별 기업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지만 기업 집단의 규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이라 할지라도 적정 규모를 넘어 지나치게 메머드화하면 규모의 경제는 실현되지 않는다. 또 하나 주장되는 것으로 재벌의 '다각화 논리'가 있으나 계열회사간 서로 기술적 관계, 제품의 속성상 보완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서로의 보완 효과로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등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벌은 이러한 산업적 연관

(1) 지주회사 설립의 금지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다른 하나 이상의 회사가 주식이나 지분을 확보하여 하나 내지 수개의 회사를 지배하려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형태로는 이론상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모두 가능하지만 가족적 또는 폐쇄적인 기업 형태인 합자회사, 합명회사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각 재벌의 본부를 정점으로 하여 그 하부에 많은 회사를 피라밋 형식으로 지배함으로써 통일적인 지휘 체제를 이루는 것으로 소액의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경제력 집중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우리나라 재벌의 특성상 그 소유가 개인(가족) 중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굳이 지주회사라는 별도의 기구를 이용할 필요가

<표 7> 30대 기업집단의 계열기업 보유 현황 (개)

구분 \ 연·월	87. 4.	90. 4.	92. 4.	94. 4.
평균계열기업수	17.6	18.3	19.6	20.5
평균업종수	10.0	12.0	15.6	19.1

- ※ 표준 산업 분류중 분류상 60개 업종 기준
- ※ 영위 업종수가 많은 그룹은 36개에 달함
- ※ 계열 기업수가 많은 그룹은 58개에 달함
- ※ 87~92년은 87년 이후 계속 지정된 29개 기업집단 기준

없어 아직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2)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상호 채무보증의 제한

이 제도는 91년 12월 3차 법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매년 4월 1일자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의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자기 자본의 20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93년 4월 1일 현재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96년 3월 말까지 해소해 나가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따라서 공정거래 제도에서는 상호 채무보증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① 대규모 기업집단내의 편중 여신을 초래하여 상호출자와 함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② 경제력을 상실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한계 부실기업의 퇴출을 막아 그룹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한다. ③ 경쟁의 기본 요소인 원활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종국적으로 국가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만 ①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합리화 계획 또는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②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 여신에 대한 보증, ③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

<표 8>

30대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조원)

자기 자본	채 무 보 증 금 액			자기자본대비율(%)	
	합계 (B)	제외 대상 (C)	제한 대상 (D=B-C)	B/A	D/A
35.2	165.5	44.9	120.6	469.8	342.4

된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93년 4월 1일 현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무려 165.5조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로 하고 있는 금액을 빼고 나면 120.6조원으로 자기자본 35.2조원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경우 기타 기업에 비해 물적 담보 뿐만 아니라 자기 계열회사까지 서로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중 여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상호 채무보증 형태는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자본의 분배 구조를 왜곡시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다른 건설한 기업의 여신 기회를 박탈하고, 경쟁력이 없는 부실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 기업에게 금융 자원이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금융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을 가져온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의 과도한 채무보증은 엄격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약한 특정 산업 부문을 정책적으로 육성시키거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상호출자의 금지

상호출자는 ① 기업간에 주식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즉 서로 출자분이 상계되므로 실제로 자금이 오가지 않고서도 장부상으로만 오고가는 가공적 출자로서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거나 계열 기업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출자 유형중 가장 불합리한 형태이고, ② 기업 공개를 회피하고 계열 회사간 상호출자(甲社 ↔ 乙社)로 특정 대주주가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82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

서 상호출자를 금지하였다. 그 후 84년 商法을 개정하면서 母子 관계에 있는 회사간에 있어서 子회사가 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제342조의 2)하였다.

현행 상법에 의하면 자기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거의 법집행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는 상법의 경우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商法상의 相互株 보유의 제한은 기업간에 직접적인 상호 주식 보유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環狀形·複合形 등과 같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상호간의 주식보유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법상의 상호주 보유의 제한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8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同法에 상호출자 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동규제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당시 상호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토록 하였다. 법에 위반하여 상호출자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주식의 처분을 명령하고 시정될 때까지 동 주식은 의결권의 행사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4)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출자총액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86년부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타사 출자 총액을 자기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이번 94년 12월 공정거래법 4차 개정에서 다시 25%로 대폭 낮추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와 상호출자의 금지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표 9〉 대규모 기업집단 평균 출자 비율 (%)

87년	90년	93년	94년
44.8	32.1	28.0	26.8

※ 87년 제도 도입 시행 당시 순자산 대비 44.8%에서 7년이 지난 94년 4월 현재 26.8%로 감소되었음.

담당하려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규제 대상은 피라미트를 형성하는 모기업에 국한되는 것이고, 상호출자의 규제 대상은 직접적인 상호출자이므로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출자는 규제할 수가 없다. 또한, 상호출자는 加工의인 자본창출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계열 확장의 유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하였다.

계열회사들간의 순환적인 출자(고리형 상호출자: A社 → B社 → C社 → A社 출자)도 역시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로 볼 때에는 결국 자산의 순환에 불과하여 상호출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가공자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 제도는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타사 출자는 인정하되 타사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기업의 다각적 확장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소유분산 및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집단은 예외를 인정해 주고, 국가의 당면과제인 SOC사업의 제1종 시설에 대한 출자인 경우 20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계열회사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없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는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금융·보험회사의 영업의 성격상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이 자산 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에 취득한 주식으로 계열회사의 지배를 위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